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875 발의연월일: 2023. 12. 8.

발 의 자:이만희·이명수·이인선

권성동 • 김상훈 • 류성걸

박성민 • 백종헌 • 김용판

김 웅 이태규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,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・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,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(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34조제1호)

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·질병, 업무정지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,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.

나.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(안 제20 조의2 및 제31조제1호 신설)

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·시행하지 아니한 경우, 종합방재실을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한 경우,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.

다.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(안 제31조, 제33조 및 제34조)

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형벌규정 중 경미한 사항을 분리하여 과태료로 전환하고, 그간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총괄재난 관리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을 겸직하게 한 관리주체 등으로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5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"(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)"을 "(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·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
- 2. 협의회의 구성・운영
- 3.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
- 4.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 운영
- 5.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· 운영
- 6.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운영
- 7. 제19조에 따른 유해 · 위험물질의 관리 등
- 8.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・운영
- 9.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

10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총괄재난관리자는"을 "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"로, "지휘·감독한다"를 "지휘·감독하게 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"을 "절차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"으로 한다.

-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- 1.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2.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 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5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제2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0조의2(조치명령) ① 소방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

보완 또는 수리 · 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- 1.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위반하여 관리·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·시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재난·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·감독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을 설치 ·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
- 8. 종합방재실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9.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·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10. 피난안전구역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·운영 기준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- 11.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·위험물질 반출·반입 관리를 위한 위 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12. 제19조제4항에 따른 유해·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 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
- 13.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해·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"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자 또는"을 "위반하여"로 한다.
 - 1.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제33조에 제2호의2, 제2호의3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2의2.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게 한 자
 - 2의3.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 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
 - 4.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

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4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자
 - 2.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 - 3.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 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
 - 4.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 - 5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 - 6.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라 명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

에 따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12조(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)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·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 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 직할 수 없다.

- 1.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
- 2.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3.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
- 4.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에 관한 사항
- 5.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수립・시행에 관한 사항
- 6.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7.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

 체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개 정 안

제12조(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)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 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총괄·관리하게 하기 위하 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총괄재난 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 록 하여야 한다.

- 1.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

 피해경감계획의 수립·시행
- 2. 협의회의 구성 · 운영
- 3.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
- 4.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・운영
- 5.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 리체제의 구축·운영
- 6.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 역의 설치·운영
- 7. 제19조에 따른 유해·위험 물질의 관리 등
- 8.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의 구성·운영

- 8.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9. 제19조에 따른 유해·위험물 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10.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11.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 난유도에 관한 사항
- 12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

 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

 부렁으로 정한 사항

<신 설>

- 9.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 난유도
- 10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
-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- 1.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 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2.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 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 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

- ② <u>총괄재난관리자는</u> 해당 초 고층 건축물등의 시설·전기· 가스·방화 등의 재난·안전관 리 업무 종사자를 <u>지휘·감독</u> 한다.
- ③ (생략)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 가 <u>제3항</u>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.
-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, 등록, 업무정지의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3. 제5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
자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
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
총괄재난관리자가
<u>지휘·감독하</u>
게 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5
- 제4항
·
<u></u>
● 절차 및 총괄재
난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
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<u>은 대통령령</u>
제20조의2(조치명령) ① 소방청
<u>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</u>
<u>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</u>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
수리·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

명할 수 있다.

- 1.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위반하여 관리・운영하고 있는 경우
- 2.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·시행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난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・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을 위반하여 총괄재 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 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총 괄재난관리자가 재난・안전 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・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을 설치・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

-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 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 지 아니한 경우
- 8. 종합방재실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9.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난안 전구역을 설치·운영하지 아 니한 경우
- 10. 피난안전구역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・운영 기준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
- 12. 제19조제4항에 따른 유해

 ·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

 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

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

 경우
- 13.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해・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

제3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1. (생략)

- 2.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제33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 제33조(과태료) 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 - 1. 2. (생략) <신 설>

요한	사항을	준수하지	아니
<u>한</u> 경	<u> </u>		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.

제31조(벌칙)	
	 _

- 1.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 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3.	 	<u>위반</u>	하여		
_	 				
-	 				
_	 			- —	

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<신 설>

3. (생 략) <신 설>

- 제34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 제34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 - 1. 삭제
 - 1의2.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
 - 2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 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 니한 자
 - 2의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게 한 자

- 2의3.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 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
-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 료제출을 한 자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 - 1.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 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총 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날부 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 - 3.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

3.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 고하지 아니한 자

-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 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지 아니한 자
- 4.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- 5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나한 자
- 6.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 고하지 아니한 자